##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431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김상욱・김선교・조지연

박준태 • 박덕흠 • 김기현

최형두 • 김예지 • 이종배

서천호 · 성일종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공공기관·특수법인 등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 어 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다른 유사한 공공기 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 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조제1항 중 "100만원"을 "500만원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과태료) ① 제6조를 위반	제34조(과태료) ①
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	
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<u>500만원</u>
부과한다.	,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